의안번호	제3074호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의 결 사 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26. 3. 13.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74호

제출연월일: 2026. 3. 13.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권고한 개정 대상 자치법규로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선(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2)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검토결과: 의견없음[복지지원과-8390(2026. 2. 23.)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213호

가) 예고기간: 2026. 1. 27.~2026. 2. 19.(23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 전수교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시물의 관리)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 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위탁 운영) ①·② (생 략)	제7조(위탁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시 전수교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 제14조 (생 략)	제8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시행 중인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최 다 원

참고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